

정 관

사단법인 오픈플랫폼개발자커뮤니티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우리 법인은 사단법인 오픈플랫폼 개발자 커뮤니티라 한다.

제2조 [목적] 우리 법인은 오픈플랫폼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개발 생산성 및 품질 향상, 관련 SW 개발자의 역량 강화와 상호 교류, 오픈소스SW 개발과 확산을 위한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1. 우리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우리 법인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우리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오픈플랫폼 개선과 발전에 관한 사업
2. 오픈플랫폼 관련 교육 및 국내외 확산에 관한 사업
3. 오픈플랫폼 관련 SW 및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개발자 간의 상호 교류와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5. 기타 우리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 [법인의 이익] 우리 법인의 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할 수 없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1. 우리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단, 회원의 자격에

관한 제반사항 등은 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우리 법인의 회원은 개인, 법인 및 단체가 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우리 법인의 회원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정회원은 우리 법인이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우리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우리 법인의 이사는 5인 이상 30인 이내(이사장 1인 포함)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기만료 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임]

1. 이사는 3인 이상의 정회원 동의 또는 이사회를 통해 추천하며, 추천된 임원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2.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 호선한다.

제11조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우리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우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2조 [고문]

1. 우리 법인에는 고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법인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운

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13조 [이사장직무대행자의 지명] 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의 순서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이사회

제14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법인 운영관련 제 규정의 제·개정
7. 이사 및 이사장 등 임원의 선임
8. 기타 법인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

제15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을 의장으로 하여 우리 법인의 중요한 사항을 결의한다.
2.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이사가 회의 소집일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목적을 명시하여 통지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제16조 [이사회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제17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1.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이사가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8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5장 총회

제19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법인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승인
3.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0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1회,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1주일 전에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정회원의 의결권]

1. 총회의결권은 정회원에게만 있으며, 1인 1개로 한다.(정회원인 법인·단체는 그 대표자가 의결권을 행사한다.)
2. 정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의 대리인은 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개회 및 결의]

-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 총회는 재적 정회원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 법인의 해산 의결을 제외한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3조 [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24조 [총회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의 2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제25조 [총회의결의 특례]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 이사 취임 및 해임이 회원 본인에 관한 사항일 경우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우리 법인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6장 사무국

제26조 [사무국] 우리 법인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한 실무부서로서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의 역할은 부칙에서 정한다.

제27조 [사무국 직원]

-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사무국 아래에는 유급 실무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28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회원 연회비
- 사업에 수반되는 수입
-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
- 찬조금 또는 보조금
- 기타의 수입

제29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0조 [회계년도] 우리 법인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장 해산

제31조 [해산] 우리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해당사항을 30일 이전에 회원에게 통지하고,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 [해산 본회의 재산귀속] 우리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시킨다.

제9장 시행세칙

제33조 [규칙의 제정과 변경]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규칙의 제정과 변경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 [설립당초의 임원] 본 법인의 설립당초 임원현황은 별지기재와 같다.

2022년 2월 18일

사단법인 오픈플랫폼 개발자 커뮤니티